

目

次

1. 1995년도주요업무보고 ————— 37
2.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5
3.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5

1995. 7. 11

1995年度

主要業務報告

平 昌 郡

一 般 現 況

— 강원도 남부 內陸위치 : 標高 500m以上 高冷地 69 % —

- 面 積 : 1,463 Km² (農地 147, 林野 1,235, 其他 81)
- 世 帶 數 : 14,458 世帶 (農家 6,003, 非農家 8,455)
- 人 口 : 50,548 名 (前年對備 1,176名 減少)
- 行 政 區 域 : 1邑 7面 4出場所 183行政里 744個班
- 公 務 員 數 : 616名 (1人當 擔當住民 82名)
- 財 政 規 模 : 69,826百萬원

○ 一 般 會 計 : 63,331百萬원

(單位 : 百萬원)

歲 入	依 存 收 入	自 體 收 入	指 定 收 入
	48,446 (76.5 %)	12,173 (19.2 %)	2,712 (4.3 %)

(單位 : 百萬원)

歲 出	投 資 事 業 費	基 本 經 常 費	豫 備 費 · 其 他
	38,277 (60.4 %)	24,083 (38.1 %)	971 (1.5 %)

○ 特 別 會 計 (7種) : 6,495百萬원

'94 郡政의 成果와 教訓

【 成 果 】

○ 郡民의 和合과 自尊意識을 振作시킨 한해

- 농 촌 잘 살 기 운 동 의 本 賞 수 상
- 제 17회 魯城祭 行事의 완전 民間主導 정착
- 제 12회 강원도 民俗藝術競演大會의 종합 우수상
- 제 25회 강 원 도 韓牛 競進大會의 종합 우 승
- 평창의 歷史와 뿌리찾기를 위한 郡誌 및 邑面誌 발간

○ 計劃的인 地域開發 態勢 確立

- 平昌郡 綜合 開發 10個年 計劃 수립
- 錦塘溪谷 郡立公園 基本計劃 수립

【 教 訓 】

- 大型事故 예방을 위한 부실시공방지 및 安全點檢 重要성 自覺
- 松亭宅地 分讓 低調로 稅收결합,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 自省

'95 主要業務計劃

【 郡政目標 】

밝고 豊饒로운 새 平昌建設

【 力 點 施 策 】

1. 世界化 實現과 地方自治 具現
2. WTO 出帆 對應 競爭 農業 育成
3. 水質保全과 快適한 生活環境 造成
4. 均衡的인 地域 開發 促進
5. 國民餘暇 地帶開發과 文化·體育 振興

世界化 實現과 地方自治具現

1. 世界化의 地方的 實現

○ 世界化 力量 結集

- 世界化 意識 教育 強化 : 接客業所 서비스教育, 外國語教養
- 多衆 利用施設의 國際수준화 : 施設改善, 看板 外國語 併記

○ 無限 競爭力 強化

- 행정 조직의 經營化 : 機構·人力 減縮
- 世界化 對應 專門人力 養成 : 機關, 企業體 1~2名

○ 國際 交流 協力 活性化

- 國際 都市 間 자매결연 : 자치행정, 관광, 농업분야 교류
- 農·畜産物 수출센터 設置 : 평창군, 농협, 원협, 축협으로조직

【 外國觀光客 誘致團 派遣 】

- 誘 致 團 : 6名(평창군, 용평리조트, 오대산공원관리사무소)
- 派 遣 國 :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 派 遣 時 期 : 年2回(丹楓+골프), (雪景+스키), 패키지상품개발
- 觀 光 弘 報 : 관광공사, 여행사 ⇒ 觀光客 誘致

2. 國際 冬季 스포츠大會 誘致 對備

- 99 冬季 아시안 게임 誘致 확정
 - 10여個國 10,000여名 (스키, 빙상)
- 97 월드컵 스키대회 龍坪 개최 內諾
 - 20여個國 100여名 (남자回轉, 大回轉)

○ 스포츠大會 實務 企劃團 設置運營

- 企劃團 : 20名 (평창군, 용평, 보광, 성우리조트)

- 機能 : KOC, 문체부, 강원도 關係部署 실무협조

횡계 도시환경개선, 숙박, 스포츠시설 확충

○ 스포츠 施設의 國際 規格化 擴充

平昌郡 : 龍坪리조트, 普光휘닉스파크리조트+ **橫城郡** : 成宇리조트

【 施設 總 規模 】

- 競技場 施設 : 슬로프 24면 ⇒ 55면, 리프트 16기 ⇒ 31기
크로스컨트리 10Km, 氷上경기장 5개소
- 宿泊 施設 : 既存 1,063室 5,914名 ⇒ 3,874室 28,860名

3. 本格的 地方自治 具現

○ 全 公職者 親切의 可視化

- 親 切 의 體 質 化 : 「禮의 行動」 「상냥한 말씨」 「친절한 전화」
- 對民 자세 획기적 轉換 : 「肯定」 「積極」 「能動」 자세
- 친 절 倍 加 運 動 전 개 : 住民을 내家族, 내 이웃처럼 對面
- 타기관 民願출원 비교체험 : 소감발표, 토론회 개최

○ 住民과의 信賴, 親和感 造成

- 郡守 주2회 奧地마을 방문 : 불만, 불편사항 聽取
- 邑面長 1日 1마을 방문 : 주민대화, 民意收斂
- 郡職員 出身마을 담당제 : 마을행사, 慶弔事, 宿願등 鄉土管理

○ 成熟한 自治力量 培養

- 「주민」의 公僕으로 봉사 : 質좋은 서비스 제공
- 「議會」의 同伴 關係 構築 : 지역발전의 牽引 역할

○ 自主財源의 擴充

- 經營 所得 事業 擴大 : 溫泉 開發, 먹는물 開發
- 民間 資本 적 극 誘 致 : 觀光 業 體, 産業 體

WTO 出帆 對應 競爭農業 育成

1. UR農政 示範郡 育成

- 高冷地 淸淨채소 需給安定 : 2,144ha, 83,000 M/T (全國의 27%)
파종, 출하時期조절, 圃田買取확대등
- 成長作目 示範團地 育成 : 유리온실6,048坪, 토마토 年420M/T
- 施設 育苗 供給 : 고추, 배추, 洋菜類등 年 2,053萬株
- 「平昌 韓牛」 名品化 : 한우전업농육성, 축산물판매장, 상표등록
- 地域 特産物 育成 : 산채, 산머루, 메밀, 송어등
※ 綜合進度 : 64%

2. 尖端 農業 施設 育成

- 花卉생산 유통단지 조성 : 유리온실 2.3ha, 年 920千株
- 園藝作物 현대화 시설 : 비닐하우스 18ha, 고추, 洋菜類
年 621 M/T
- 高冷지채소 지하수 개발 : 지하수 7공, 灌水 16ha
※ 綜合進度 : 80%

3. 農産物 加工 流通施設 擴充

- 産地 加工 工場 建立 : 1棟 100坪, 약초 年 885 M/T 가공
- 農산물 包裝 센터 建立 : 3棟 1,400坪, 年 200만 M/T 포장
※ 綜合進度 : 20%

4. 地域特性에 맞는 所得源 開發

- 自動化 育苗場 設置 : 유리온실 500坪, 育苗 400萬株
- 여름 양송이, 高冷地 느타리 버섯 재배 : 16棟 800坪, 年74M/T
- 生藥 生産 施設 : 1棟 100坪, 年 54 M/T
- 고추냉이 (물와사비) 재배 : 2個所 300坪, 年 0.4 M/T

※ 綜合進度 : 70%

5. 畜産經營 改善

- 養豚 團地 造成 : 돈사 31棟 5,000坪, 15千頭사육
- 家畜飼育 기반 造成 : 草地 45ha, 호맥 227ha
- 家畜 環境汚染 防止 : 분뇨유기질 비료화, 분뇨처리시설

※ 綜合進度 : 15%

6. 山林資源의 所得化

- 산불진화 태세 확립 : 산불진화대 3,630명, 유급순산원 80명
- 산불예방 지역책임제 : 1읍면, 2실과장 순찰및 홍보, 소방차 대기
- 山林資源의 造成 : 조림 953ha, 육림 3,436ha, 임도 15km
- 솔잎 흑파리 방제 : 수간주사 3,400ha, 피해목 벌채 1,350ha
- 산초나무 團地造成 : 自生團地 육림 2ha , 양묘 100천본

※ 綜合進度 : 70%

水質保全과 快適한 生活 環境造成

1. 맑은물 供給

- 蓬坪 上水道 施設 擴充 : 600 T/D ⇒ 9,500 T/D
 - 珍富 上水道 施設 擴充 : 2,000 T/D ⇒ 9,500 T/D
 - 上水道 老朽 管 교 체 : 1,700 m
 - 平昌 上水道 취수보 설치 : 150 m
 - 道岩 上水道 배수지 확장 : 1,000 T/D
 - 簡易 上水道 新設 · 補修 : 4 個所
- ※ 綜合進度 : 25%

2. 清潔한 生活 環境 造成

- 쓰레기 從量制 履行率 제고 : 施行初 95% ⇒ 6月末까지 99%
 - 쓰레기 소각로 설치 : 2 個所 (平昌, 珍富)
 - 農村 汚水 처리 시설 : 2 個所
 - 家庭쓰레기 소각용 화덕공급 : 240 個
- ※ 綜合進度 : 50%

均衡的인 地域開發 促進

1. 道路網 擴充

【 總 102個路線 898.46km , '94까지 鋪裝率 44.8% 】

- 郡道 擴·鋪裝 ————— 8.6km 4,302百萬元
 - 무이 ~ 상진부 : 4.6km 2,301百萬元
 - 신리 ~ 마평 : 3.0km 1,501百萬元
 - 한탄 ~ 마하 : 1.0km 500百萬元

※ 綜合進度 : 21%

- 農·漁村 道路 擴鋪裝 ————— 8.1km 2,091百萬元
 - 운교 1 ~ 운교 2 : 3.1km 800百萬元
 - 대화 4 ~ 대화 7 : 1.8km 466百萬元
 - 무이 1 ~ 무이 2 : 1.2Km 309百萬元
 - 차항 1 ~ 차항 2 : 2.0km 516百萬元

※ 綜合進度 : 16%

- 農村 마을길 鋪裝 ————— 22個 路線 6.2Km 620百萬元

※ 綜合進度 : 100%

【 道路 鋪裝率 : 44.8% ⇒ 46.6% 】

2. 都市基盤施設의 擴充

○ 橫溪橋 架設 (60M, 750百萬元)

- 推進實績 : 250百萬元 투자 (지장물철거 4건, 설계완료)

- '95 推進 : 500百萬元 투자 (교량 60M)

※ 綜合進度 : 15%

○ 平昌달동네 진입로 整備 (405M, 690百萬元)

- 推進實績 : 450百萬元 투자 (부지 685坪, 지장물 37件)

- '95 推進 : 240百萬元 투자 (진입로 확·포장 405M)

※ 綜合進度 : 10%

○ 橫溪 진입로 擴鋪裝 (720M, 900百萬元)

- 推進實績 : 450百萬元 투자 (용지보상 838坪, 도로확장280M)

- '95 推進 : 450百萬元 투자 (도로 확·포장 720M)

※ 綜合進度 : 65%

○ 農村定住生活圈 開發事業 (주택81동, 3,910百萬元)

- 對 象 : 대화면 대화5리 양지마을

- 推進實績 : 2,816百萬元 투자 (부지매입, 기본및실시 설계)

- '95 推進 : 1,094百萬元 투자 (택지조성, 주택건설, 오수처리시설)

※ 綜合進度 : 10%

國民餘暇地帶開發과 文化·體育振興

1. 農·觀光 産業 接木으로 地域 所得化

○ 觀光 受容態勢 確立

- 觀光客 受容 住民意識 變革 : 親切, 清潔, 滿足스런 觀光案内
- 郷土 食品, 商品 開發 : 地域 土種 産品 발굴 판매

○ 觀光 所得 획득 방안 講究

- 郷土 飲食 판매점 育成 : 郡 公認으로 信賴感 認定
- 民泊 및 농특산물 판매확대 : 民泊의 高級化, 농특산물 名品化

【 봉평 메밀 觀光村 造成 】

- 대상 마을 : 봉평면 창동리(이효석 생가마을)
- 메밀 상품화 : 토산품 판매장, 요리실습장 100坪
메밀재배(사진촬영장) 15,000坪
- 한마당 어울마당 : 年 1 회, 民俗놀이

※ 綜合進度 : 60%

2. 民間資本 誘致 觀光開發

- 龍平리조트 施設 擴充 ('95 ~ '97) ————— 綜合進度 15%
 - 스포츠 施設 : 슬로프 24면 ⇒ 33면, 리프트 16기 ⇒ 19기
크로스 컨트리 10Km, 氷上 경기장 1個所
 - 宿泊 施設 : 1,063室 5,914名 ⇒ 1,564室, 7,918名
(호텔 242室, 콘도 1,271室, 유스호스텔 51室)
- 휘닉스 파크 리조트타운 개발 ('93 ~ '97) — 綜合進度 32%
 - 位 置 : 봉평면 면온, 진조, 무이리 일원 (株, 보광)
 - 面 積 : 3,089km² (1,152千坪), 3,089億원 투자
 - 스포츠 施設 : 스키장 (슬로프10면, 리프트6기), 골프장, 체육시설
 - 宿泊 施設 : 1,363室 16,210名 (호텔 223室, 콘도 1,140室)
- 韓國콘도 簡易스키場 ('93 ~ '95) ————— 綜合進度 60%
 - 位 置 : 도암면 용산리 산 50-2 (株, 아시아나 개발)
 - 面 積 : 124,086km² (37千坪)
 - 施 設 : 슬로프 3면, 리프트2기, 숙박시설 198室, 429億원 투자
- 五台山 觀光호텔 ('93 ~ '95) ————— 綜合進度 42%
 - 位 置 : 진부면 간평리 221 (株, 현대종합건설)
 - 施 設 : 부지 5,420坪, 호텔 255室, 175億원 투자

3. 郷土文化 繼承 發展

○ 「제18회 노성제」의 郷土文化 축제화

- 行 事 主 管 : 36개 기관·단체 공동주관
- 行 事 内 容 : 민속, 문화, 체육행사

○ 광복 50周年 기념행사

- 민족 發展史 홍보 : 畫報 제작 배부
- 光 復 行 事 : 光復節 기념행사, 민속경연대회

○ 定道 600周年 기념사업

- 기념식수 : 郡廳舍 郷土樹木 (느티나무) 植栽
- 기념홍보 : 定道 600周年 意味 照明

4. 體育施設의 擴充

○ 대화면 종합 체육관 건립('93 - '96) —— 2,400百萬원

- 推進實績 : 312百萬원 투자 (敷地 1,457坪, 설계완료)
- '95 推進 : 630百萬원 투자 (건물828坪, 경기장, 관람석, 무대)
- ※ 綜合進度 : 건축허가 및 공사입찰 준비중

○ 평창 弓道場 건립('94 - '95) —— 196坪, 235百萬원

- ※ 綜合進度 : 40%

懸案事項

1. 蓬坪都邑整備 마무리 ('93 ~ '95)

- 整備對象 : 도로정비 1,661m, 상·하수도 4,652m
토지보상 4,418坪, 건물정비 61동
- 所要事業費 : 4,393百萬元 (토지보상 3,781, 공사비 612)

- 推進狀況 : 2,462百萬元 투자 (국·도비 801, 군비 1,661)
- '95 推進 : 1,213百萬元 투자 (국비53, 도비210, 군비950)
- '95不足事業費 718百萬元 (중앙지원건의)

※ 綜合進度 : 70%

2. 平昌 綜合藝術會館 建立 ('94 ~ '98)

- 位置 : 평창읍 종부리 산 66-6
- 規模 : 연건평 1,190坪 (지하1, 지상2층), 부지 7,478坪
- 主要施設 : 대공연장 500석, 전시실, 향토사료실
- 所要事業費 : 6,400百萬元 (既確保 1,800, 今後所要 4,600)

- 推進狀況 : 100百萬元 투자 (군비 100), 설계, 착공
- '95 推進 : 1,700百萬元 투자 (도비1,400, 군비300), 건물骨組工事

※ 綜合進度 : 10% (건축기초 공정 완료)

地域内 他機關 投資事業

【文化體育部】

○ 韓國 靑少年 修鍊마을 造成 ('93 ~ '96)

- 位 置 : 龍坪面 白玉浦里 山 154-1番地 一圓
- 敷地 面積 : 140千坪
- 主要 施設
 - 管理시설 : 管理棟, 研修棟, 宿泊棟 등
 - 運動시설 : 綜合運動場, 蹴球場, 排球場, 테니스장 등
 - 修練시설 : 캠프파이어장, 자연탐사장, 야영장 등
- 所要事業費 : 23,700百萬元

- '94까지 推進實績 : 부지매입, 진입로 교량가설, 부지정지

- '95 計 劃 : 管理棟, 研修棟, 宿泊棟 등

※ 綜合進度 : 29%

【原州 國土管理廳】

○ 平昌우회도로개설 ('94~'97) : 延長 1.4Km, 幅 18m, 8,142百萬元

※ 綜合進度 : 32%

○ 珍富우회도로개설 ('94~'98) : 延長 4.3Km, 幅 18m, 13,000百萬元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
------	---

제출년월일 : 1995.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국가경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 거래허가 및 공시지가업무등 지적분야 행정수요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적과를 신설

2. 주요골자

가. 지적과 신설 : 15과 ⇒ 16과(제2조)

- 이관 : 재무과 지적계, 토지관리계 ⇒ 지적과
- 신설 : 지적정보계

나. 재무과 분장사무중 일부를 삭제(제7조)하고 지적과 사무 분장 규정(제8조)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실과의 설치)중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삽입한다.

제7조 (재무과)중 '14호' 내지 '23호'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적업무의 기획·조정
2.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공고
3.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 환수제 운용
4. 토지거래 규제(허가·신고)업무
5.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업무
6.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운영
7. 지적공부 보존관리
8. 지적측량검사 및 이동지정리
9.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
10. 지적장비 운영·관리
11. 공유토지분할 특별법 운용
12. 지적전산화 및 통계관리
13.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업무

14. 지적공부 등본·열람 및 지가열람 확인원 박급
15. 부동산 실명제 관련업무
16. 외국인 토지 및 비법인 등록번호 관리
17. 그 밖에 토지 및 지적에 관한 사항

제16조(건설과) 중 제19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실과의 설치) 평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u>재무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지역경제과·축산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민방위과</u>를 둔다.</p>	<p>제2조 ----- ----- -----<u>재무과·지적과·사회과</u>----- ----- -----</p>
<p>제7조 (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호 내지 13호 : <생략></p> <p>14. <u>지적공부 보존 관리</u></p> <p>15. <u>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업무</u></p> <p>16. <u>지적민원 처리</u></p> <p>17. <u>토지조사 및 지적측량</u></p> <p>18. <u>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u></p> <p>19. <u>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사항</u></p> <p>20. <u>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업무 (국토이용관리법 제3장의) 다만, 허가 및 신고에 관한업무의 제외</u></p> <p>21. <u>개발지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u></p> <p>22. <u>개발이익환수제 운영</u></p> <p>23. <u>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u></p> <p>24. <생략></p>	<p>제7조 (재무과) ----- -----</p> <p>1호 내지 13호 : <현행과 같음></p> <p>14. <삭제></p> <p>15. <삭제></p> <p>16. <삭제></p> <p>17. <삭제></p> <p>18. <삭제></p> <p>19. <삭제></p> <p>20. <삭제></p> <p>21. <삭제></p> <p>22. <삭제></p> <p>23. <삭제></p> <p>2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16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8. <생략></p> <p>19. <u>도시계획의 입안사항</u></p> <p>20. <생략></p>	<p>제8조(지적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적업무의 기획·조정 2. 개별토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결정 3.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 환수제 운용 4. 토지거래 규제(허가·신고)업무 5.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업무 6.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운용 7. 지적공부 보존관리 8. 지적측량검사 및 이동지정리 9. 지적측량 대행법인 감독 10. 지적장비 운영·관리 11.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용 12. 지적전산화 및 통계관리 13. 토지표시 변경 등기축탁업무 14. 지적공무 등본·열람 및 지가열람 확인원 발급 15. 부동산 실명제 관련업무 16. 외국인 토지 및 비법인 등록번호 관리 17. 그 밖에 토지 및 지적에 관한 사항 <p>제16조(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8. <현행과 같음> 19. <삭제 > 20. <현행과 같음>

"돈 안드는 깨끗한선거-우리도할수있습니다"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54-2011-2223, 2228 / 담당 양창환

문서번호 지방 12200-981
 시행일자 1995. 6. 15. (양)
 경우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결	군수		지	
결	일자 시간	1995. 6. 16	시	
수	번호	660	결	부군수
처리과		내무과	재	과장
담당자		김남국	등	계장
			할	

제독 지적기구·인력보강 및 정비 지침 시달

1. 국가경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 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등 지적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 지적과 미설치 시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구 및 정원을 별첨과 같이 승인 하니 빠른 시일내에 보강될수 있도록 조례·규칙등 개정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4. 지적과가 기설치된 시군은 계 편제 및 명칭변경에 대한 표준기구안 및 사무분장안을 참조,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운영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첨 부 1. 지적기구·인력보강 및 정비지침 1부
 2. 정원승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지적과, 더 (01~13)



地籍機構 · 人力補強 및 整備指針

-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 허가등 지적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적과 미설치 시군의 기구·인력을 보강하고
- 지적과 신설 시군과 계 편제 순서 및 명칭이 상이한 기존 시군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정비코자함

□ 地籍課 設置現況

- 설 치: 9개시군(춘천, 원주, 강릉, 등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철원)
- 미설치: 9개시군(태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機構 · 人力補強 및 整備概要

① 기구·인력 보강

- 대상시군 : 지적과 미설치 9개시군
- 보강내용 : 1과(지적과) 1계(지적정보계) 증설, 2계 이체
 - 기구 : 현행 2계(세무·재무과내 지적계, 토지관리계 편제)
⇒ 1과 3계(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 정원 : 시군당 현행 8~9명 ⇒ 13~14명 (5명 보강)
 - 순증 : 2명 (지적 5급 1, 지적 6급 1)
 - 상계 : 3명 (7급이하 3)

② 기구 정비

- 대상시군 : 지적과 기설치 운영 9개시군
- 정비내용 : 계 편제 순서조정 및 명칭변경(지정계 ⇒ 지적정보계)
 - 현행 : 지정계, 지적계, 토지관리계
 - 조정 :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 地籍機構 · 人力補強 內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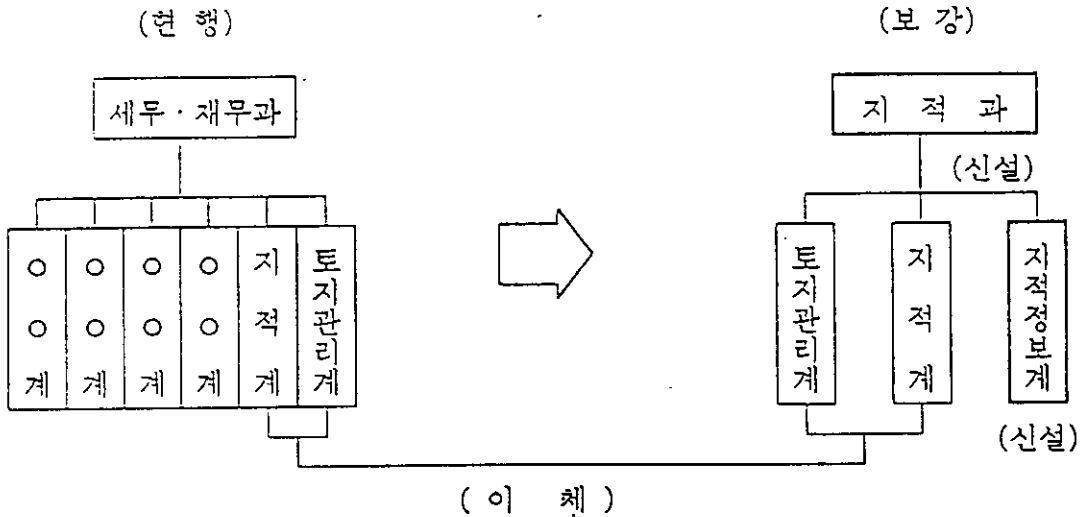
구 분	기 구		현 정 원 (명)	보강정원 (명)	비 고
	현 행	신설 보강			
계	-	9과 9계	-	45명	
태백시	2계	1과 1계	8	5	
영월군	2계	1과 1계	9	5	
평창군	2계	1과 1계	8	5	
정선군	2계	1과 1계	8	5	
화천군	2계	1과 1계	9	5	
양구군	2계	1과 1계	8	5	
인제군	2계	1과 1계	9	5	
고성군	2계	1과 1계	8	5	
양양군	2계	1과 1계	9	5	

※ 지적부서 보강정원 시군별 정원 5명중 과장 · 계장요원을 제외한
3명은 이체조정하여 보강

□ 機構 標準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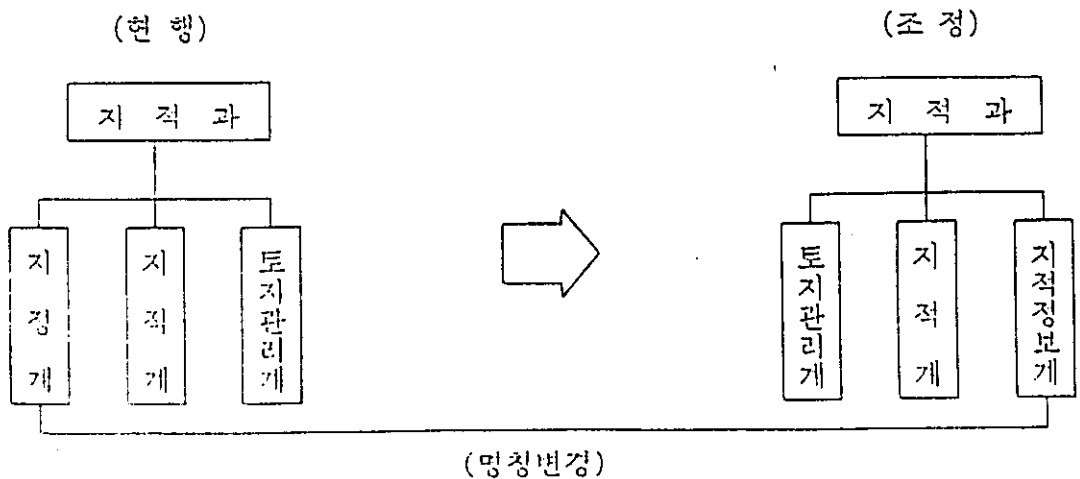
① 지적과 신설시군 (9개시군) : 1과 1계 증설, 2계 이체

- 세무과 기능분리 : 태백,
- 재무과 기능분리 :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② 지적과 기설치 운영시군(9개시군) : 계 편제순서 및 명칭변경

- 대상시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철원



定員承認書

시군명	계	지방지적 사무관	지방지적 주사	비고
태백시	2	1	1	※ 시군별로 7급이하 3명을 이체조정하여 신설되는 「지적정보계」에 보강
영월군	2	1	1	
평창군	2	1	1	
정선군	2	1	1	
화천군	2	1	1	
양구군	2	1	1	
인제군	2	1	1	
고성군	2	1	1	
양양군	2	1	1	
계	18명	9명	9명	

※ 정원시행일 : 1995년 6월 12일

— 이 하 여 백 —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

제출년월일 : 1995.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가. 국가경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허가 및 공시지가업무등 지적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신설되는 지적과의 지적5급과 6급 각 1명씩 증원하고 지적정보계의 인력3명을 읍면의 정원에서 상계하여 보강하고
- 나. 부단체장 정원삭감 및 자치단체장 비서 정원을 조정하며
- 다. 대화면 쓰레기소각장 관리 기능인력을 순수 증원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군 지적과 신설 : 정원 13 명
- 순증 : 2 명 (지적5급1, 지적6급1)
 - 상계 : 3 명 (읍면 7급이하 Δ 3 \rightarrow 지적과 3)
 - 이관 : 8 명 (재무과 지적계 5, 토지관리계 3)
- 나. 부군수 정원(지방서기관) 삭감
- 다. 군수 비서실장 정원(읍면 7급이하 정원으로 상계) 조정
- 내무과 행정6급 Δ 1 \rightarrow 군수 비서실 행정6급 1
 - 읍면 7급 Δ 1 \rightarrow 내무과 7급 1
- 라. 읍면 기능인력(쓰레기소각장 관리) 순증
- 대화면 기능8등급(기계) 1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12"을 "217"로하고, 제4호중 "243"을 "240"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 (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본청·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청 : <u>212</u> 인 2. 의회사무과 : 11 인 3. 직속기관 : 99 인 4. 사업소 : 8 인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243</u> 인 	<p>제2조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 청 : <u>217</u> 인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u>240</u> 인

“돈 안드는 깨끗한선거-우리도할수있습니다”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54-2011-2223, 2228 / 담당 양창환

문서번호 지방 12200- 853
 시행일자 1995. 5. 25 (화)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총무·내무과장

선결	군수	5/26	지	
시	일자	1995. 5. 26	결	부군수
수	번호	내무	재	과장
처	리과	내무과	공	계감
담	당자	김남국	람	

제목 신규확충시설 운영관리인력 정원 승인

1. 관련 대호

- 태백시 총무 12200~470 ('95. 3. 28)호
- 평창군 내무 12113~535 ('95. 3. 16)호
- 철원군 내무 12200~550 ('95. 3. 24)호
- 인제군 내무 12200~520 ('95. 3. 24)호
- 양양군 내무 01110~548 ('95. 3. 30)호와 관련임

2. 위 관련호로 승인신청한 신규확충 시설의 운영관리인력 정원을 별첨과 같이 승인하니 지방자치법 제21조에 의거 관련규정 제·개정사항을 사전보고후 공포 시행 하기 바람.

첨 부 정원승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사무 전 결

수신처 : 더 (05-11, 13, 16, 18)



정 원 승 인 서

시군별	부서명	시설명	직명	직급	정원	비고
태백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종합경기장	지방행정주사	6급	1	행정1, 특육1 전기1, 기계1 기계1, 전기1 조무1
			지방7급이하		4	
	지방기능직 9등급이하		3			
	본청		지방행정주사	6급	△1	
			지방7급이하		△3	
	소계				4명	
평창군	대화면	쓰레기소각장	지방기능직 8등급이하		1명	기계
철원군	갈말읍	쓰레기소각장	지방기능직 8등급이하		1	기계
	근남면	쓰레기소각장	지방기능직 8등급이하		1	기계
	환경보호과	간이오수처리장	지방기능직 8등급이하		3	기계2, 전기1
	소계				5명	
인제군	북면	쓰레기소각장	지방기능직 8등급이하		1	기계
	환경보호과	간이오수처리장	지방기능직 8등급이하		1	화공
	건설과	배수펌프장	지방기능직 8등급이하		1	기계
	소계				3명	
양양군	환경보호과	간이오수처리장	지방기능직 8등급이하		2명	기계1, 전기1
합계					15명	

※ 정원시행일 : 1995년 5월 25일

— 이 하 여 백 —

“돈 안드는 깨끗한선거-우리도할수있습니다”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54-2011-2223, 2228 / 담당 양창환

문서번호 지방 12200-981
 시행일자 1995. 6. 15. (당)
 경유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선결	군수		지	
점	일자 시간	1995. 6. 16	시	
수	번호	6600	결	부군수
처리과	내무과		재	과장
담당자	김남		증	계장
			합	

제목 지적기구·인력보강 및 정비 지침 시달

1. 국가경제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 허가 및 공시지가 업무등 지적관련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2. 지적과 미설치 시군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기구 및 정원을 별첨과 같이 승인 하니 빠른 시일내에 보강될수 있도록 조례·규칙등 개정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4. 지적과가 기설치된 시군은 계 편제 및 명칭변경에 대한 표준기구안 및 사무분장안을 참조, 관련 규칙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가 운영될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첨 부 1. 지적기구·인력보강 및 정비지침 1부
 2. 정원승인서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지적과, 더 (01~18)

地籍機構 · 人力補強 및 整備指針

- 부동산 실명제, 토지거래 허가등 지적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적과 미설치 시군의 기구·인력을 보강하고
- 지적과 신설 시군과 계 편제 순서 및 명칭이 상이한 기존 시군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정비코자함

□ 地籍課 設置現況

- 설 치: 9개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철원)
- 미설치: 9개시군(태백,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機構 · 人力補強 및 整備概要

① 기구·인력 보강

- 대상시군 : 지적과 미설치 9개시군
- 보강내용 : 1과(지적과) 1계(지적정보계) 증설, 2계 이체
 - 기구 : 현행 2계(세무·재무과내 지적계, 토지관리계 편제)
⇒ 1과 3계(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 정원 : 시군당 현행 8~9명 ⇒ 13~14명 (5명 보강)
 - 순증 : 2명 (지적 5급 1, 지적 6급 1)
 - 상계 : 3명 (7급이하 3)

② 기구 정비

- 대상시군 : 지적과 기설치 운영 9개시군
- 정비내용 : 계편제 순서조정 및 명칭변경(지정계 ⇒ 지적정보계)
 - 현행 : 지정계, 지적계, 토지관리계
 - 조정 :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

□ 地籍機構 · 人力補強 內譯

구 분	기 구		현 정 원 (명)	보강정원 (명)	비 고
	현 행	신설 보강			
계	-	9과 9계	-	45명	
태백시	2계	1과 1계	8	5	
영월군	2계	1과 1계	9	5	
평창군	2계	1과 1계	8	5	
정선군	2계	1과 1계	8	5	
화천군	2계	1과 1계	9	5	
양구군	2계	1과 1계	8	5	
인제군	2계	1과 1계	9	5	
고성군	2계	1과 1계	8	5	
양양군	2계	1과 1계	9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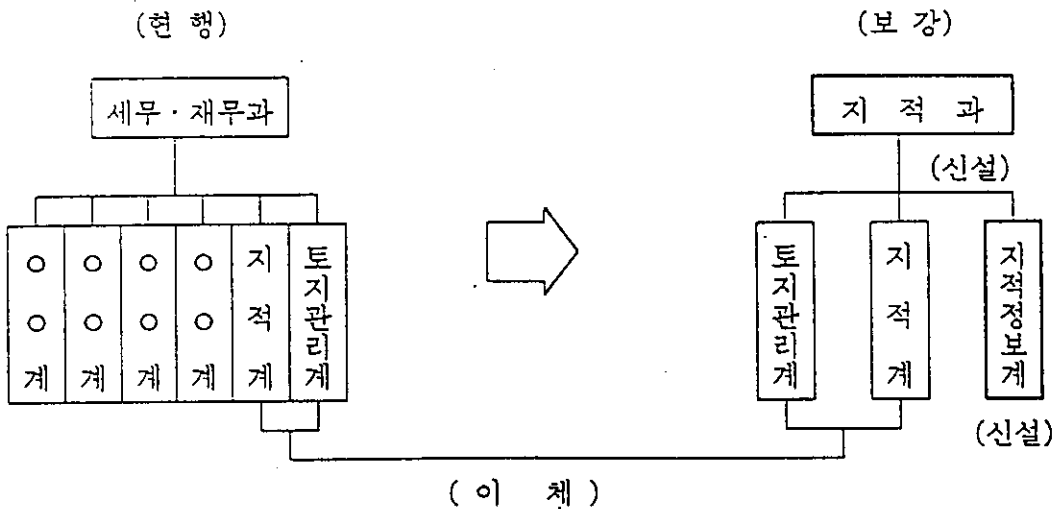
※ 지적부서 보강정원 시군별 정원 5명중 과장 · 계장요원을 제외한
3명은 이체조정하여 보강

□ 機構 標準案

① 지적과 신설시군 (9개시군) : 1과 1계 증설, 2계 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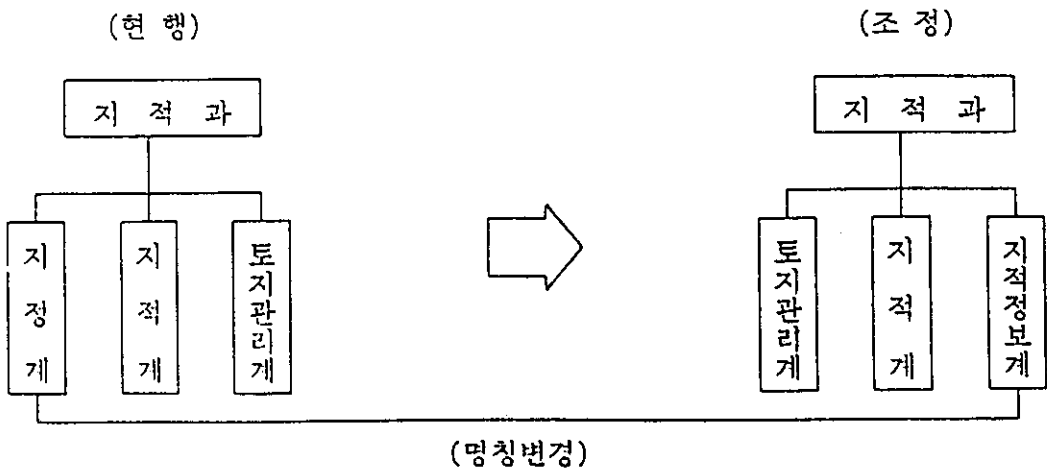
○ 세무과 기능분리 : 태백,

○ 재무과 기능분리 :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② 지적과 기설치 운영시군(9개시군) : 계 편제순서 및 명칭변경

○ 대상시군: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철원



定員承認書

시군명	계	지방지적 사무관	지방지적 주사	비고
태백시	2	1	1	※ 시군별로 7급이하 3명을 이체조정하여 신설되는 「지적정보계」에 보강
영월군	2	1	1	
평창군	2	1	1	
정선군	2	1	1	
화천군	2	1	1	
양구군	2	1	1	
인제군	2	1	1	
고성군	2	1	1	
양양군	2	1	1	
계	18명	9명	9명	

※ 정원시행일 : 1995년 6월 12일

— 이 하 여 백 —

송신부위	1200	송신일시	1995. 6. 28
수신부위		수신일시	
송신사유	내부	서명날인	

"돈 안드는 깨끗한선거-우리도할수있습니다"

강 원 도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15/(0361)54-2011-2223, 2228 / 담당 양창환

문서번호 : 지방 12200 - 1053
 시행일자 : 1995. 6. 28 (영구)
 경유
 수신 : 수신처참조
 참조

선결	근수	지시	
접	일자 시간	결	무근수
수	번호	재·공	과 장
처리과	내무과	계	장
담당자	김삼국	발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등 보강시행지침 시달

1. 관련근거 : 영제14조, 제16조 및 제2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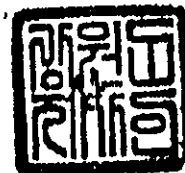
2.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등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행정환경의 변화를 앞두고 단체장의 보좌기능강화와 관련한 정무부지사의 신설, 비서실 기능의 개편보강, '98. 6. 30까지 국가공무원으로 유지하는 기초 무단체장의 직급배정등을 위한 시행지침을 시달하니

3. 도의 관련부서는 인사관리·사무실 및 집기확보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군에서는 기구·정원조례 및 규칙개정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첨 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등 보강시행지침 1부. 끝

강 원 도 지

수신처 : 거(08, 12) . 더 (01~18)



地方自治團體長의 補佐機能등 補強施行指針

민선자치단체장 체제의 출범을 앞두고 정무부지사 신설 및
비서실 보좌기능의 보강등과 관련한 시행지침임

江 原 道

2. 地方自治團體의 長 秘書要員 定員措置

補強背景

- 민선단체장체제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로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등 보좌기능을 강화하되,
- 정부의 간소한 조직운영 방침에 부응하여 기존의 비서실 인력의 범위내에서 전문인력 영입등의 조치가 가능토록하여 비서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施行指針

(1) 自治團體別 秘書要員 定員基準

— 현재의 비서인력 범위내에서 정원조치

구 분	보강인원	보 강 내 역	비 고
도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4급 1 (실장) ○ 별정5급 1 ○ 별정6급 1 (수행) ○ 별정7급 1 ○ 기능직 1 	
시·군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정6급 1 (실장) ○ 기능직 1 	

※ 운전원(1)은 별도 인정하되, 현원활용

(2) 定員措置 및 事後管理要領

- 현재의 비서인력의 범위내에서 정원의 증원 없이 상계조정하되, 별정직(도는 4명, 시·군은 1명)으로 배치
 - ※ 기능직2명(운전원 1, 여직원 1)은 별도로 인정하되, 현원활용
 - 도는 5급 1명포함 6급이하로, 시·군은 7급이하로 상계조정하되 무보직 6급이 있는 시군은 6급을 우선적으로 상계조정
 - 정원은 총무과 소속으로 관리
- 상계조정되는 정원은 즉시 감축하되, 그현원에 대한 별도정원은 '95. 12. 31까지 인정
 - 금후 결원등 인사요인 발생시 우선해소
- 별정직 비서인력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별정직 비서직류의 공무원으로 근무상한기간은 '98. 6. 30까지로 함
 - ※ 영제16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 협의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
- 비서인력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책정하고자 할 경우 새로운 민선단체장의 의사를 들어 보강인원 범위내에서 일반직으로 책정가능
 - 단, 이경우 일반 + 별정복수직 책정은 불허함

(3) 行政事項

- 민선단체장 의사를 확인 별정직 또는 일반직 책정여부 결정
 - ※ 취임전이라 하더라도 당선자 확정시 현안보고등에 포함 즉시확정
-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개정 완료 : '95. 7월초
-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개정 완료보고 : '95. 7. 15한

3. 市·郡 國家職 副團體長 職級配定

措置背景

□ 制度의 施行根據

- '94. 3. 16 최초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만료일 ('95. 7. 1~ '98. 6. 30)까지 일반직 국가공무원 배치근거 규정
※ 한시적 국가직 유지
- '94.12. 22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4828호) 제정
- '94.12. 31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14497호) 제정
- '95. 6. 30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예정)

□ 措置背景

-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 두는 부시장·부군수의 정원 및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자치단체별 직급표에 따라 임명 제청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기 위함

施行指針

(1) 직급 배정기준 ('95. 1. 1 현재 주민등록 인구기준)

- 인구 50만 이상 시·군 ————— 이사관 (2급)
 - 인구 15만 ~ 50만 미만 시·군 — 부이사관(3급)
 - 인구 15만 미만 시·군 ————— 서기관 (4급)
- ※ 시·군별 직급표 (별첨)

(2) 등 기준은 '98. 6. 30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두는
사안임을 고려, '95. 1. 1 이후 인구 증가등 변동요건이 충족
되더라도 직급의 재조정은 고려 불가

(3) 지방직 부시장·부군수 정원은 '95. 6. 30부로 정원 삭감하되

- '95. 7. 1부터 국가직 기초부단체장이 임명될때 까지
현재의 부시장·부군수의 복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인사지침에 의함

地方公務員 定員承認書 (II)

【市·郡】

사 근 별	정 원			당해본청 정원감축 (7급 이하)	비 고
	계	별정 6급상향	기능직		
춘천시	2명	1명	1명	△2명	
원주시	2명	1명	1명	△2명	
강릉시	2명	1명	1명	△2명	
동해시	2명	1명	1명	△2명	
태백시	2명	1명	1명	△2명	
속초시	2명	1명	1명	△2명	
삼척시	2명	1명	1명	△2명	
홍천군	2명	1명	1명	△2명	
횡성군	2명	1명	1명	△2명	
영월군	2명	1명	1명	△2명	
평창군	2명	1명	1명	△2명	
정선군	2명	1명	1명	△2명	
철원군	2명	1명	1명	△2명	
화천군	2명	1명	1명	△2명	
양구군	2명	1명	1명	△2명	
인제군	2명	1명	1명	△2명	
고성군	2명	1명	1명	△2명	
양양군	2명	1명	1명	△2명	
합 계	36명	18명	18명	△36명	

※ 정 원 시 점 일 : 1995년 7월 1일

단, 부청정관의 감축은 시·군수실에 새로두는 비서요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정원 감축(7급이하로 감축)하되 '95.12.31까지 별도 정원 인정 (단, 무보직6급이 있는 시·군은 6급 1명씩 감축상계)

地方職 副市長・副郡守 公務員定員 減縮承認書(III)

시 군 별	계	지방부이사관	지감서기관	비 고
부천시	△1명	△1명		
김천시	△1명	△1명		
강릉시	△1명	△1명		
용해시	△1명		△1명	
북포시	△1명		△1명	
수원시	△1명		△1명	
삼척시	△1명		△1명	
공천군	△1명		△1명	
경성군	△1명		△1명	
영월군	△1명		△1명	
평창군	△1명		△1명	
동선군	△1명		△1명	
삼원군	△1명		△1명	
화천군	△1명		△1명	
양구군	△1명		△1명	
인제군	△1명		△1명	
고성군	△1명		△1명	
양양군	△1명		△1명	
합 계	△18명	△3명	△15명	

※ 정원시행일 : 1995년 6월 30일